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신성범・박정하・조은희

이만희 • 김승수 • 박대출

김종양 · 정희용 · 강대식

박준태 • 유상범 • 조배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이 법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	1 <u>19세</u>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u>	<u>1</u> 9세
<u>19세</u> 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
	인을 위한 협조) 이 법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
	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
	<u>다.</u>